

1. 개정이유

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표시등 및 표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표시등 및 표지 관리기준에 관리이력의 기록 및 보관 추가(안 별표 12)

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에 소유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 결과 등의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추가하여 현행 관리기준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2 제목 중 “제29조제2항 관련”을 “제29조제4항 관련”으로 하고, 제1호아목 중 “적합하도록 관리할 것”을 “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자체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할 것”으로 하며, 제2호다목 중 “적합할 것”을 “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자체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할 것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12]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기준(<u>제29조제2항</u> 관련) [별표 12] 1. 표시등 관리기준 아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<u>관리할 것</u> [별표 12] 2. 표지 관리기준 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<u>적합할 것</u>	[별표 12]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기준(<u>제29조제4항</u> 관련) [별표 12] 1. 표시등 관리기준 아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<u>관리하고 자체점검 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할 것</u> [별표 12] 2. 표지 관리기준 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<u>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자체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할 것</u>